

2017년 소득세법 개정안 기타소득 필요경비 조정 안내

■ 개정내용

구분	현행	개정	기준일
기타소득 필요경비율 조정	80%	70%	2018.04.01. 이후
		60%	2019.01.01. 이후

■ 적용시기: 2018년 4월 1일 이후 지급분

■ 개정이유: 사업소득과의 과세형평 제고를 위함

■ 주요사항: 원천징수세율은 현행 4.4% → 6.6%(2018년 4월~12월) → 8.8%(2019년 이후)로
증가될 예정

■ 적용항목: 인건비, 강연료, 자문료, 연구수당, 연구개발능률성과급 등

■ 적용예시

항목	현행	개정		비고	
		2018년	2019년		
총지급액	1,000,000	1,000,000	1,000,000		
필요경비	비율	80%	70%	60%	
	금액	800,000	700,000	600,000	
소득금액 (총지급액-필요경비)	200,000	300,000	400,00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소득금액 5만원 이하 (총지급액 기준) - 필요경비 80%: 250,000원 이하 - 필요경비 70%: 166,666원 이하 - 필요경비 60%: 125,000원 이하 	
원천징수액	소득세	40,000	60,000	80,000	소득금액의 20%
	지방 소득세	4,000	6,000	8,000	소득세의 10%
	합계	44,000	66,000	88,000	원천징수액은 현재 총지급액의 4.4%에서 6.6%(2018년), 8.8%(2019년)으로 변경됨
실지급액	956,000	934,000	912,000		